

# 사회적 정의와 국가: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嘉戸 一将(Kado Kazumasa)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 법학 교수)

이 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ILO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일본정부가 ILO 설립 시에 어떠한 방침으로 임하였으며, 또 어떠한 사정에서 1938년 일본이 ILO에서 탈퇴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정의’의 존립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정부가 당초 설정한 방침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외무대신 우치다 야스야(内田康哉)는 강화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대표였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에게 훈령을 내려(1918년 12월 9일) 다음과 같은 강화회의 참가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협조하여 국제연맹설립에 참가할 것, 둘째, 평화조약이 인종간 평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셋째, 독일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권익을 일본이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강화회의 개최의 취지에 따라 국제적 협조를 내세우면서도, 서양 선진국들에 대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아가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권익 확보를 노린 정도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일본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재구축에 관한 구체적 비전을 갖고 있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는 추후 보안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당시에 이미 서양 여러 나라들로부터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강화회의 참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서양 각국에 대해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 자세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본정부의 준비 부족은 ILO 설립에 관한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즉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적인 노동법제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자가 큰 공헌을 한 결과로 유럽 각국이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그 탓에 일본정부는 당초 마키노 노부아키에게, 노동법제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유럽의 ‘특수한 사정’에 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동 조약에 조인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하였고, 특히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제, 아동노동금지, 주1일 휴일제 등에 일본의 ‘국토·풍속 및 공업 상태’를 이유로 반대하도록 전달하였다. 그러나 서양 각국과의 협조가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던 경제계의 의향을 고려한 결과 국제협조를 중시하게 된 일본정부는, 단순히 노동법제에 관한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요구를 협약에 반영하도록 서양 각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 일본정부의 요구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 공장의 실정이나 노사관계는 서양의 여러 선진국과는 다른 것이므로 서양선진국들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공장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그것이었다.

한편 일본이 조약의 조인으로 태도를 전환한 데에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양 각국에서 나타난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이 그것이다. 국제노동법제위원회의 제1회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 Pierre Colliard의 연설을 당시의 주불대사(松井慶四郎·마츠이 케이시로)는 국제연맹설립의 의의가 국제적인 민주적 조직의 구축에 있으며, 나아가 국제노동법제위원회가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요약, 이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보통선거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서양 각국에서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정부 대표는 일본의 사정을 배려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서양 각국, 특히 현장 초안을 제출한 영국 대표 George Nicoll Barnes를 접촉하여 설득하였다. 일본이 요구한 것은 주로 현재의 ILO 헌장 제19조에 관한 몇몇 쟁점들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정부가 ‘유예기간’이나

‘적용제외’를 둘 수 있도록 요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점, 즉 일본과 서양 각국 사이의 ‘국토·풍속 및 공업 상태’의 차이였다. Barnes와 마키노는 1919년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고, 현재의 ILO 헌장 제19조에서 발견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키노와 일본정부의 의도는 이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발표되지 않은 채 봉인된 마키노의 연설문 초고에서 발견된다.

1919년 4월 11일 파리강화회의 총회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위 연설문 초고는 우선 노동법 제가 정비되는 것에 대한 찬사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think it right to add that our employers on the whole have not been unmindful of the happiness of the employed ; they have done and doing much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employees. There is a marked desir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lasses and their leaders are exerting to solve industrial problems on the basis of harmony and understanding. It is our desire and ambition to present before the world an organisation, working with as less friction as possible between these classes.”(나는 자본가들이 대체로 노동자들의 행복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하고 있다. 두 계급 사이에 협력이라는 뚜렷한 바람이 있으며 지도자들은 조화와 상호이해에 기반을 두어 산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급들 간에 마찰을 최소화하여 일하는 조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야망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의 이 연설문 초고는 사전에 일본의 신문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일본의 신문에서는 마키노가 파리강화회의 총회에서 연설을 하지 못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조화와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산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등의 기만적 내용이 해당 연설문 초고에 포함된 점 역시 비판되었다.

그렇다면 왜 마키노 노부아키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노사간의 ‘조화와 상

호이해' 등의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던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일본정부는 일본의 사회계층 간 대립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래 일본정부의 주장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정통성을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픽션에서 구하였으며, 나아가 의회 개설 후에는 정당이 기업경영자나 대토지 소유자의 이익대표에 지나지 않고 천황만이 각 사회계층의 이익대립을 초월하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픽션을 선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픽션을 제창하는 근거로 천황의 역사성을 들었으며, 이외에도 독일의 사회왕제(das soziale Königtum)의 이념이나 사회정책학도 참조하였다. 요약하면 사회계층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어 혁명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주는 각 사회계층으로부터 초월적인 지위에 위치함으로써 사회의 단일성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에서 내무성이나 농상공부의 관료들은 19세기 말부터 노동자 보호법의 정비에 착수하여 1911년에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법은 아동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한정적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 애초에 자본가 계층이나 보수 정치가로부터의 반발 탓에 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노사관계를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자본가나 보수 정치가들의 반감은 일본에서의 민법전 논쟁(1889~1892년)을 연상시킨다. 이는 프랑스인 법학자 Gustave Émile Boissonade의 지도 아래에서 편찬된 구 민법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당시 보수 정치가나 법학자들은 구 민법전의 시행에 반대하였다. 가족관계를 서양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들의 비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후에 호주권으로 제도화된 부친에 의한 가족의 지배가 비개인주의적인 일본의 '이에(イエ・家)'제도에 적합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은,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파악되는 노사관계를 대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계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경영자의 가부장제적 지배를 주장한 것이었다. 공장법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한정적 보호에 머물고 만 것도 이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장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노동법제는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가족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orges Sorel는, Léon Bourgeois의 연대주의적 입장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

가 하나의 대가족이고 빈민은 사회 전체의 부(富)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연대의 실현을 프롤레타리아에 호소하는 것으로 요약하면서, 그 연대주의가 애국주의(le patriotisme)로 회수되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유추는 전쟁이나 애국주의 앞에서 노동법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Sorel은 타당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동자가 '사회 전체의 부(富)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제는 보장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말하자면 Sorel이 Pierre-Joseph Proudhon에서 도출해 낸 '도덕의 원리(les principes de la morale)', 즉 '인간의 존엄(la dignité humaine)'을 자기와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을 '권리(le droit)'라 부르고, 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정의(la Justice)'라고 부른다는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던 탓에 일본의 노동법제는 취약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에서 앞에서 언급한 마키노 노부야키의 연설문 초고로 돌아가도록 하자. ILO에 참가하는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이란 서양 각국과의 협조관계의 일환으로 노동법제의 정비라는 방침을 받아들이는 하지만, 노사관계를 서양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재편성(reformer)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보수파가 노래하는 가족적 국가라는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ILO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정부의 입장이었다. 이 입장에는 일본의 법 시스템의 기초가 국가의 '아버지(父)'로서의 천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제로 노정되어 있었다. 일본정부의 노동법제 정비에 관한 구상을 도식화하면 두 개의 양자택일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제협조나 사회적 대립의 해소나 하는 것과, '사회적 정의'의 담당자는 천황인가 노동자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미성숙하다고 형용해야 마땅한 이 두 개의 양자택일 탓에 일본은 ILO를 탈퇴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 1925년에 제정된 두 개의 법률과, 만주사변 이후의 중국 침략이다. 먼저 두 법률부터 확인해 두자. 1925년에 보통선거법(단 여성이나 한국·대만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해 소득제한이 철폐되고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며 유권자는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동법에 기한 최초의 선거(1928년)에 의해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체(國體)'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이 제정, 1928년에는 동법에 기한 마르크스주의의 대규모 탄압(3·15 사건)이 이루어졌다. '국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와 제4조에 규정된 ‘천황이 통치권(입법·행정·사법에 관한 권한)을 총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대심원(대일본제국헌법하의 대법원)의 판결(1929. 5. 31)에서 확정된 의미이며, 정치적으로는 1930년대 부터 패전까지 정부에 의해 선전된 바와 같이 ‘각 종교를 초월하는 천황신앙’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치안유지법이 존재하는 한, 법(droit)의 궁극적 원천이 천황이라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도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는 물론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천황신앙에 의해 통합되는 한도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보통선거제도의 의회제가 보완되는 것이다.

이 두 법률이 일본에서 ILO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는 계기가 된 사정을 조금 더 확인해 두자. 그 사정을 해명하는 열쇠는 이 시기 독일에서의 Carl Schmitt에 의한 의회주의 비판에 있다. Schmitt에 따르면, 의회는 부르주아의 ‘교양(Bildung)’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토론 덕분에 부르주아의 이익대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음에 비해, 보통선거제도의 실현에 의한 민주화는 의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단순한 ‘이익대표의 위원회’로 변용시켰다. 밀실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 ‘위원회’는, 이미 공개성을 전제로 한 의회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조차 아닌 탓에 민주주의와도 합치하지 않았다. Schmitt에 따르면 애당초 평등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 국민의 동질성에 비추어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또는 절멸하는 데에 있다. 의회주의 비판의 논리적 귀결은 ‘예외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자’로서의 주권론자였다. Schmitt의 의회주의 비판은 Georges Sorel의 그것에 필적하는데, 민주화를 위해 Schmitt가 제창한 것은 샌디칼리즘(Syndicalisme)이 아니라 독재체제였다. 결국 평등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의 대체물(얼터너티브)로서, 특히 사회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전능한 주권자에 의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수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Schmitt의 의회주의 비판이 1930년대에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헌법학자 쿠로다 사토루(Kuroda Satoru)는 Schmitt가 주장하는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진전에 의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와 보통선거제에 의한 의회주의의 변용을 전제로, ‘의회주의의 사회적 한계’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의 관념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의 통

일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적 동질성’이란 어떻게 환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쿠로다 사토루는 역시 Carl Schmitt의 논의에서 시사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헌법제정권력론으로서의 주권론에 주목한다. 쿠로다에 따르면 Schmitt가 그의 주권론에서 참조한 Emmanuel Sieyès의 헌법제정권력론은, 다원주의적인 권력분립론과 국민주권론을 헌법질서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 조화시킨 것이다. 즉 권력의 분립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단일한 것으로 관념될 수 있는 까닭은, 국가의 여러 기관을 헌법에 의해 창설한 헌법제정권력이 단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제기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이며, 천황이 헌법제정권력이라고 쿠로다는 주장한다. 나아가 제4조에서는 통치권이 헌법의 제규정에 따라 행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예외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자’라는 Schmitt의 주권자 개념은 일본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 아니라, 쿠로다는 처음부터 Schmitt의 주권론은 실존주의적이고, 또 군주와 국민을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국가관념으로부터 유래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유한 국가관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1930년대에 일본에서 유포된 ‘군민일체(君民一體)’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천황과 국민의 일체화라는 신앙(국체론, 國體論)을 전제로 하는 한, 일본 사회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민족적 동질성’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쿠로다 사토루의 메이지 헌법 해석은 자유주의적인, 혹은 입헌주의적인 해석을 제창한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침략전쟁의 수행으로 내몰린 1930년대 일본에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사상은 탄압되었으며, ‘군민일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동질화 강요의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ILO를 탈퇴한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일이었다.

일본에서 ILO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만주사변 이후의 일이었다. 예를 들어 극도로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적 담론에서 ILO를 비판한 주장에 따르면, ILO는 제2인터내셔널 지배하에 있으며, 제2인터내셔널이 만주사변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고 고발하였으므로 ILO도 또한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ILO가 주장하는 ‘사회적 정의’는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단락적 비판을 주장한 것이 원래는 노동운동가로 사회주의 정당(사회민주당)의 당원이고, 만주사변 이

후에 국가사회주의 정당(일본국가사회당)의 당원이 되어, 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했다는 점이 다. 결국 노동자의 이익 대표라 할 수 있을 법한 입장에 있으면서, ILO에 대해 비판을 전개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연맹에서 만주사변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은 일본정부는 1933년에 국제연맹 탈퇴를 통고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ILO로부터는 탈퇴하지 않았다(다만, 1933년 이후 ILO에서 일본정부 대표는 보다 한층 더 소극적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ILO로부터의 탈퇴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해 ‘군민일체’ 이 데올로기가 횡행하게 되었고,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広巖太郎)를 위시한 노동법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전쟁 수행에 비협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으며, ‘숙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1937년 10월에 또다시 ILO의 노동자대표단이 노구교 사건(같은 해 7월 7일) 이후 일본의 행동이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결의를 한 데 대해 일본정부는 1938년 5월부터 ILO 탈퇴를 모색하고, 탈퇴가 일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대해 ILO의 일본정부 대표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외무대신에게 발송하였다. 이 의견서는, ILO 사무국은 일본의 탈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일전쟁 등 정치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년도, 즉 1937년 11월에 체결된 독일·일본·이탈리아의 방공협정에 비판적인 노동자 대표단은 일본이 탈퇴하게 되면 더더욱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ILO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일본정부는 1938년 10월 24일 ILO에 분담금 납부 거절을 통보, 탈퇴(1940년)하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ILO와의 인연과 탈퇴의 경위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하 두 가지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국제평화와 사회적 정의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이다. ILO 현장은 국제평화의 기초로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험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오히려 평화야말로 사회적 정의 실현의 조건이라는 점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본의 ILO 참가는 국제협조주의가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유지되는 동안 한 것으로 한 것이었으며,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은 바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켜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협조주의적인 입장의 정치가나 지식인은 배제되고 내셔널리즘이 대두하게 되어 일본 고유의, 혹은 일본에 특수한 사회적 정의가 제창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일본 고유의, 혹은 일본에 특수한

사회적 정의란 어디까지나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시 체제의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일본 국민뿐 아니라 당시의 조선이나 대만 등 일본의 식민지 사람들도 가혹한 노동환경을 강요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정의는 항상 이질적인 것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가족적 국가관의 영향으로 사회적 정의의 담당자가 반드시 노동자 스스로라고 인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아버지로서 표상된 천황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1925년에 보통선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회를 국민 전체의 대표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쟁점화되어 천황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나아가 일본에 의한 중국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천황과 국민은 일체로서의 국가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게 되고, 일본의 법 시스템은 일본사회의 고도의 동질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Carl Schmitt가 주장한 바 있는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를 전제한다면, 일본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등성에 대한 지향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동질성의 실현을 향한 운동으로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동질성 실현을 향한 운동은 천황 신앙(국체론)의 강화와 (보통선거제와 함께 시행된) 치안유지법에 의해 천황 신앙과 모순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배제로 전개되었다. 그 탓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에는 곧바로 천황신앙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적 담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며, ILO로부터의 탈퇴 요구 역시 ILO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등의 악질적 선전(Demagogie)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설령 민주주의가 평등성의 관념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동질성에 대한 요구 없이 사회를 이질적인 것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세계화(globalisation)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맹목적 애국주의(chauviniste)적인 담론이나 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국제평화 그리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LI**